

## 2007년에 적용되고 있는 CMS의 새로운 진료비 수가

메디케어가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행위별수가(Fee Schedule)와 사전지불보상제도(Prospective Payment System: PPS)로 구분된다. 수가표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Part B)<sup>1)</sup>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작성된 수가목록으로 최대수가(Fee Maximum)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지불 방식인 PPS는 의료공급자에게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Part A<sup>2)</sup>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상한다.

2006년 2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는 진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적자감소법안(Deficit Reduction of Act of 2005: DRA)이 통과되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이 법에 의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하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RA는 각 주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가 '환자의 의료서비스 고비용 인식, 예방 서비스이용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 건강결과에 대한 환자의 책임 부여, 상담 및 교육 활동 제공, 전자 업무 처리, 의료공급자에게 협상된 수가율 적용'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DRA에 따라 2007년 메디케어 Part B에 해당하는 진료비수가(Physician Fee Schedule)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의 진료비수가표는 예방서비스의 급여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부대동맥류(Abdominal Aortic Aneurysm)의 위험이 있는 메디케어 대상자의 초음파진단검사가 1회에 한정되어 급여되며, 대장암검사는 면제 항목이다. 또한 장기간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척추측정검사 급여를

확대하는 대신 프레드니손(prednison)의 급여 범위를 최소 3달간 하루 평균 7.5mg에서 5.0mg으로 축소시켰다. 외래 당뇨병환자의 자가관리교육과 치료식도 급여 대상이다.

2007년부터는 진료비에 대해 새로운 수가율 결정 공식이 적용되었는데 CMS는 새로운 공식에 따라 2007년 진료수가율을 5.1% 낮추었다. 진료수가율은 메디케어 행위별수가제 대상자와 급여의 법적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율을 산출한 다음 진료비실질증가율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2007년 할인된 진료수가율은 진료비를 포함한 메디케어 Part B 서비스 비용을 상회, 즉 실질증가율이 목표율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6년 메디케어 Part B의 비용은 10.6% 증가했는데, 진료와 관계된 비용이 주요인이었다.

새로운 진료비수가표는 제약업자의 보고 의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제약업자들이 보고한 가격으로 평균가격(Average sales price: ASP)이 산출된다. 의사가 처방하는 메디케어 Part B 대상 약은 2005년 메디케어개혁법(Medicare Modernization Act)에 의하여 ASP에 6%를 추가하여 수가율이 결정되었다.

인접신체부위(contiguous body parts)의 다중촬영에 대한 수기도 25% 삭감된다. CMS는 다중촬영에 의해 수가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고자 50% 삭감을 계획했었으나 2007년에는 25%만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CMS는 새로운 진료비수가표(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에 따라 2007년 875,000명의 의료제공자에게 대략 615억\$가 지급될 것이라 하였다. 🌐

출처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www.cms.hhs.gov)

문의 : 조수진\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분석팀,  
nereus@naver.com

1) Part B에는 진료(physician), 응급서비스(ambulance services), 임상검사(Clinical laboratory services), 의료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 등이 있음.

2) Part A에는 입원서비스, 가정치료(home health agencies), 호스피스, 장기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 전문요양기관(skilled nursing facilities) 등이 있음.